

정치치리총람집

1. 교 회

1) 지교회의 설립

[1] 신도가 자의로 교회 개척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는지? 적법한 절차는 어떠한 것인지?

- 할 수 없다. 신도의 교회 개척은 노회의 허락 사항이 아니다.
신도가 교회 개척을 하려면 소속 당회의 허락과 지도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단계까지 그 교회가 성장하면 헌법 정치 제2장 제11조 2.에 따라 교회 설립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73-145】

☞ (【73-145】는 제73회 총회 회의록 145쪽의 표시이며 *는 편집자 주입니다)

*** 헌법 정치 제2장 제11조 2. 지교회의 설립**

- 1) 공동으로 모이는 전용 예배처와 세례교인(입교인) 10명 이상과 전담 교역자가 있어 지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단, 특수목회를 위한 교회는 예외로 한다.
 - (1) 타 교회에서 전입되는 신도는 이명증서를 제출하게 한다. 신앙을 고백하고 새로 교인되려는 사람은 정한 절차를 따라 충분히 심사한 후에 입회를 허락한다.
 - (2) 새로 설립되는 교회에 입회한 교인들은 별정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여 노회에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 (3) 말씀과 성례전의 정규적인 집행은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 (4) 각 지교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자체 내의 조직과 제도와 기구, 그리고 운영방식을 가급적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 2) 미조직교회가 당회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헌법 조항에 따라 치리장로를 선임한 다음 당회를 조직한다. 노회는 신설 조직교회에서 별정의 '지교회 조직 선언서'를 낭독하여 조직교회가 된 것을 선언한다.

2) 교회의 직원

[1] 외국인이 본 교회의 목사, 장로의 자격이 있는지?

- 「한국기독교장로회」이므로 한국 국적 이외의 사람이 교인을 대표하고 교인을 치리하는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없다. 단, 본 교단과 지급 협약을 맺고 있는 국제협력교회 파송 목사와 장로는 예외로 한다.

【71-121, 88-166, 95-167】

(* 제87회 총회 노회 수의 결과 헌법을 개정하게 되어 제88회 총회 헌법위원회가 상충되지 않도록 보완 정리함)

[2] 교회의 직원(목사, 장로, 집사, 준목, 전도사, 권사) 또는 신도가 외국으로 이민했거나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졌을 경우 그 자격이 있는지?

- 교역자(목사, 준목, 전도사)와 평신도는 영주권이 있더라도 본 교단 교인 자격이 있다.

【72-403, 87-297, 95-167】

* 단, 외국영주권을 소지한 교역자가 지교회의 청빙을 받은 경우에는 노회의 심사를 받은 후 취임식 전까지 영주권을 포기한 증명서류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이중 국적자(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유자 포함)가 한신대학교 교수로 될 수 있는지?

- 한신대학교 직제, 내규에 따르되 보직은 받을 수 없다.

【59-76】

[4] 정년 규칙에 제한되는 교회의 직원은?

- 각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가 선임하는 교회의 직원(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준목, 전도사)과 기타 모든 위원까지를 포함한다.

【59-76】

[5] 무흠 입교인은 어느 법조문에 해당되는지?

- 무흠 입교인이란 헌법 정치 제3장 제14조의 1.의 해당자로서,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제8조 2.-2)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은 자이다.

【75-171】

* 헌법 정치 제3장 제14조 신도의 구분

1. 입교인(세례교인) : 세례교인과 어린이세례를 받은 후 입교한 자. 입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회회의 회원권을 가진다.
2. 어린이세례교인 : 부모 또는 양육자의 신앙에 따라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
3. 원입교인 :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자.

*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제8조 권징의 종류

1. 재판 결과 범죄가 있다고 확인된 때에는 판결로 책벌을 정한다.
2. 책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직원에 대하여
 - (1) 시무 정지 (2) 시무 해임 (3) 정직 (4) 면직
 - 2) 신도에 대하여
 - (1) 권계 (2) 견책 (3) 수찬 정지 (4) 출교
3. 직원에게는 신도에 대한 책벌을 단과 또는 병과할 수 있다.

[6] 전도목사의 부인은 교인인가?

- 교인이다.

【86-152】

[7] 65세 이전에 자원은퇴할 수 있는지?

-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 2.에 의거하여 65세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원은퇴할 수 없다.

【89-155】

*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 2.

2.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시무를 자원은퇴할 수 있다.

[8] 서리집사 임기의 기준이 매 년도 시작을 기준하는지 임명일부터 만 1년으로 하는지요?

- 헌법 정치, 제37조 집사 7항에 의거하여, 집사의 임기는 해 교회의 인사를 기준으로 1년이며, 교회가 회기를 정할 수 있다.

【93-183】

* 헌법 정치 제6장 제37조 7.

- 서리집사는 당회 또는 공동의회에서 선임한다. 임기는 1년이다.

2. 목 사

1) 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

(1) 시무 구분과 임기

[1] 한 당회에서 부부가 담임 또는 전도목사와 부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는지와 부부 중 한 사람이 목사일 때 한 사람이 전도사로 시무할 수 있는지?

- 시무할 수 있다. 단, 전도목사인 경우에는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68-331】

[2] 전도목사 시무교회에서 부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지?

- 청빙할 수 없다.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므로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 즉, 전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청빙할 수 없다.

【68-331】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4. 부목사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중임될 수 있고 담임목사 사임시 함께 사임한다.

*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4. 부목사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가 가결하고 제직회의 찬성을 얻은 후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부목사의 계속 시무 절차는 이에 준하되 노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3] 이명하지 않고 타 노회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를 본 노회에서 목사로 임직할 수 있는지?

- 임직할 수 없다.

【68-331】

[4]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당회의 결의없이 설교할 권한이 있는지?

- 담임목사가 공석인 교회의 임시당회장은 당회의 결의 없이 설교할 수 없다.

【68-331】

[5] 준목을 부목사로 임직 청원시 목사 임직 청원은 당회 결의로 하는가, 공동의회 결의로 하는가?

- 공동의회 결의로 청빙하여야 한다. 【68-331】

[6] 전도목사와 담임목사는 언제부터 당회장이 되는지?

- (1) 전도목사는 노회의 임명을 받아야 당회장이 된다.
- (2) 담임목사는 노회의 청빙 허락을 받고 취임식시 노회장이 선포한 때부터 당회장이 된다. 【81-118】

[7] 명예목사가 다른 교회의 당회장이 되거나 시무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 있는지?

- 한 지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자는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목사의 시무구분과 임기) 6.(명예목사)에 의거하여 명예목사로 추대 받을 수 있다. 단, 명예목사는 은퇴목사이기에 다른 교회의 당회장이 되거나 시무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 없다. 【82-558】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6. 명예목사(2009년까지 유예기간으로 한다)**

명예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그 시무를 사임할 때 지교회가 그 공로와 명예를 보존하려고 공동의회의 결의로 은봉을 정하고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으로 추대하는 목사이다. 이 경우 그는 지교회의 치리권이 없다.
 (*제90회 총회에 헌법이 개정되어 2009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음.)

[8] 자의에 의한 사임절차로써 시무 부교역자(부목사, 준목, 전도사)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당회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부목사는 헌법 정치 제4장 제26조 1.(시무사임)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2-159】

*** 헌법 정치 제4장 제26조 1. 시무사임**

목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무를 사임하려고 하면 이를 교회에 알리고 노회에 시무 사임 청원을 한다. 또는 지교회가 목사의 시무를 원치 않으면 ‘해약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 노회는 교인대표와 목사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9] 타의에 의한 사임절차로써 시무 부교역자(부목사, 준목, 전도사)가 교회에 유익이 없고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어 당회에서 사임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4.과 제4장 제22조 4.에 의거하여 당회장이 해임을 당회에 청원하고 당회에서 가결함으로써 해임된다. 【82-558】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4. 부목사**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중임될 수 있고 담임목사 사임시 함께 사임한다.

***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4. 부목사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가 가결하고 제직회의 찬성을 얻은 후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부목사의 계속 시무 절차는 이에 준하되 노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2) 담임목사**[1]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으나 “단, 담임목사 은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7.)에서 자원 은퇴할 수 있는 담임목사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는지?**

- 해 교회가 청빙할 시는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 【92-126】

***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8. 담임목사 사임으로 함께 사임된 부목사는 다음 담임목사 취임시까지 해 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없고 2년 이내에는 해 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단, 담임목사 은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담임목사 취임에서 노회의 허락이 있는 후 2개월 이내에 취임식을 거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 청빙은 유효하다. 그러나 담임목사 취임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노회는 그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지, 당회에 있는지, 노회 임원에게 있는지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3-381, 87-298】

[3]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당회장권을 정지한다”는 노회의 결의에 묶여 있는 담임목사는 설교할 수 있는지?

- 설교는 목사의 특권이므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설교할 수 있다.

【68-332】

[4]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1., 제12장 제65조와 제66조에서 1년 후 취임을 조건으로 한 담임목사 청빙 공동의회가 적절한 것인지?

■ 적법하지 않다.

【73-146】

***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1. 조직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당회에서 후보인을 택한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투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교회는 재적 입교인 과반수가 날인한 ‘목사 청빙서’와 ‘공동의회록 사본’을 첨부한 ‘목사 청빙 허락 청원서’를 각 2통씩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하고 교인 대표는 노회에 출석한다. 단, 미조직 교회가 당회 조직을 허락받고 공동의회에서 장로가 피택되어 고시에 합격하였을 때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가 있다.

*** 헌법 정치 제12장 제65조 공동의회 조직**

1. 공동의회는 교인의 총회로써 그 지교회의 무흠 입교인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2.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 헌법 정치 제12장 제66조 공동의회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 2)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5] 지교회 예배 시의 담임목사의 직무는?

■ (1) 예배는 당회가 예배모범에 따라 주관한다.

(헌법 정치 제9장 제45조 3. 예배)

(2) 지교회 예배의 관할권은 노회가 담임목사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그 권한은 침해될 수 없다.

(헌법 정치 제4장 제19조 1. 목사와 예배)

(3)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설교담당 분담결정은 협의사항이 아니라 헌법 정치 제4장 제19조 1.에 의한 담임목사(당회장)의 재량 사항이다.

【79-209】

*** 헌법 정치 제9장 제45조 3. 예배**

예배 모범에 의하여 예배를 주관하고 특별 집회를 개최하며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대로 다른 목사를 임시로 청하여 예배를 인도하게 한다.

*** 헌법 정치 제4장 제19조 1. 목사와 예배**

목사에게는 노회의 권한으로 목사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있다. 그것은 예배시에 사용할 찬송, 시편, 성경 구절의 선택과 목회 지도와 설교 및 축도의 책임이다.

- [6] 조직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담임목사가 강단에 서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러 교인들이 나뉘어져 각각 노회에 담임목사 해약청원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노회에서는 수습위원회를 파송하여 수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이 경우에 기존의 당회장의 당회장권은 있는지? ② 만약 당회장권이 살아있다면 수습위원회의 결의와 당회장의 의견이 상충될 때 어느 쪽이 우선인지?
- ① 당회장권이 있으며, ② 노회의 결의에 따른다. 【91-160】

***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7. 담임목사 사임으로 함께 사임된 부목사는 다음 담임목사 취임시까지 해 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없고 2년 이내에는 해 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단, 담임목사 은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도목사

- [1] 미조직교회가 전도목사 2인을 청빙할 수 있는지?

- 할 수 없다. 【72-403】

- [2] 전도목사가 시무 중인 교회(미조직교회)가 당회 조직이 되어 조직교회가 되었을 경우 해 정기노회에서 담임목사 청빙 허락이 없으면 그 전도목사의 시무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 전도목사의 임기는 다음 정기 인사노회까지의 3년간이다. 단, 중도에 허락받은 전도목사도 만 2년 후 돌아오는 정기 인사노회로 임기가 만료된다. 그러므로 미조직교회가 중도에 조직되었고 담임목사의 청빙이 없더라도 다음 인사노회시까지는 전도목사의 임기가 존속된다. 【88-831】
(*제88회 총회 노회 수의 결과 헌법을 개정하게 되어 상충되지 않도록 보완함)

- [3] 노회에서 시무목사가 공석인 미조직교회에 파송하는 목사는 임시당회장인가, 준당회장인가?

- (1) 시무목사가 공석일 때는 임시당회장
- (2) 시무목사(전도목사)가 있을 때는 준당회장

- [4] 교회가 계속적으로 담임교역자 청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가 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도목사를 파송한 것에 대한 권한(적법성)이 있는지?

- 헌법 제9장 47조 3항에 의거하여 임시당회장을 노회가 파송할 수 있으나 전도목사 파송은 제4장 21조 3항에 의거하여 적법하지 않다.

【92-128】

[5] 헌법서식과 치리총람의 해석에 따라서 담임목사 청빙시는 ‘임시당회장’이 전도목사 계속시무 청원은 반드시 ‘대리당회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전도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서 당회조직이 허락되어 담임목사 청빙을 하게 될 때에도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당회장이 있으므로 ‘대리당회장’으로 해야 하는지요?

- 헌법 제47조 2, 3에 따라 대리당회장으로 한다. 【95-29, 60, 168】

*** 헌법 정치 제9장 제47조 당회장**

2.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신병이나 여행 등의 사정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그 노회에 소속한 목사 중에서 선임하여 당회장 임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다.
3. 임시당회장은 시무목사가 공석일 경우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임명한다.

[4] 부목사

[1] 부목사가 당회장을 대행할 수 있는지?

- 부목사는 담임목사 지도하에서 그 교회를 조력하는 목사이며 위임이 없고 *임시목사 내규에 준하며 담임목사 위탁이 있을 시 대행할 수 있다.

【40-71】

* 여기서 임시목사라 한 것은 현행 전도목사를 지칭함 (헌법 정치 제9장 제47조 2.)

[2] 정년을 앞둔 당회장이 대리 당회장을 청하여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 청원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집행하였을 시 공동의회가 합법적인가?

- 합법이다. 【72-96, 87-298】

[3] 은퇴를 앞둔 목사가 후임교역자(후임목사)를 청빙할 때 공동의회 의장이 될 수 있는가?

- 될 수 있다. 【82-551】

[4] 1) 담임목사 사임 시 부목사는 ‘부목사시무사임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 헌법정치 제21조 4항,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부목사시무사임청원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 부목사 시무사임 청원서를 노회가 수리하지 않으면 시무 자격이 유지되는지?

- 헌법정치 제21조 4항, 제22조 7항, 제91회 총회결의(91-160)에 의거하여 시무자격이 없다. [94-193]

*** 헌법정치 제21조 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

4. 부목사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중임될 수 있고 담임목사 사임 시 함께 사임한다.

*** 헌법정치 제22조 목사의 청빙**

7. 담임목사 사임으로 함께 사임된 부목사는 다음 담임목사 취임시까지 해 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없고 2년 이내에는 해 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단, 담임목사 은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헌법정치 제26조 목사의 시무 사임, 사직, 면직**

1. 시무 사임

목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무를 사임하려고 하면 이를 교회에 알리고 노회에 시무 사임 청원을 한다. 또는 지교회가 목사의 시무를 원치 않으면 해약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 노회는 교인 대표와 목사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5] 기관목사

[1]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두레누리 살림터의 기관목사 청빙 자격의 유무는?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5.에 의하여 가하며, 그 청빙절차는 제4장 제22조 5.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83-177]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5. 기관목사**

기관목사는 총회, 노회, 관계기관 및 학교, 군대, 병원, 교도소, 산업시설, 복지기관 등 특수한 분야에서 시무하는 목사다.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목사의 청빙**

6. 기관목사의 청빙은 해당부처 또는 기관의 결의와 임명권자의 청빙에 의하여 특수한 경우는 본인의 파송 청원으로 노회가 허락한다.

[2] 기관목사가 헌의, 청원, 진정, 문의 등을 노회에 할 수 있는지?

■ 기관목사는 헌의는 할 수 없고 청원, 진정, 문의는 할 수 있다.

【91-160】

[3] 기관목사가 시찰위원장, 노회장, 총회장을 할 수 있는지?

■ 할 수 있다.

【91-160】

[4] 생활보장제위원회 규정 제7조와 제9조에 의하면 기관목사의 경우에도 생보 부담금 납부의무와 생활비보조 신청권리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노회에 소속된 기관목사들이 다양한 활동영역에 사역하고 있는데, 총회생활보장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관목사의 범위는?

■ 기관목사의 범위는 헌법 정치 제4장 22조 6항에 의거하여 노회의 허락으로 헌법정치 제4장 21조 5항의 기관에 시무하는 자이며, 생보수혜대상자는 생보위 결의에 따라 선정된다.

【92-127】

*** 헌법 정치 제22조 목사의 청빙**

6. 기관목사의 청빙은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결의와 임명권자의 청빙에 의하여 특수한 경우는 본인의 파송 청원으로 노회가 허락한다.

*** 헌법 정치 제21조 목사의 자격 5. 기관목사**

기관목사는 총회, 노회, 관계 기관 및 학교, 군대, 병원, 교도소, 산업시설, 복지기관 등 특수한 분야에서 시무하는 목사이다. 임기는 재임 기관으로 한다.

(6) 원로목사

[1] 목사 정년 은퇴 연한의 기준을 목사 정년의 생일로 하는지, 아니면 노회에서 규정한 기준으로 하는지?

■ 생일이 지난 정기 인사 노회 시까지로 한다.

【72-96】

[2] 자원 은퇴하려는 목사는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75-172】

[3] 65세 미만의 목사가 신병으로 사직하는 경우 원로목사라 할 수 있는가?

-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교회의 직원) 2.와 권징조례 제11장 제105조(목사의 사직원 처리)에 의거하여 원로목사라 할 수 없다. **【82-159】**

***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2.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시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

***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제106조 목사의 사직원 처리**

무효한 목사가 헌법 정치 제4장 제26조 3.(사직) 에 의하여 노회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한 회기동안 여유를 두고 그 사유를 상세하게 살핀 후 결정하되 그가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유익하게 시무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직원을 수리하고 그를 노회 명부에서 삭제하며 입교인의 이명 증서를 주어 그가 원하는 지교회로 보낼 것이다.

[4] 자원 은퇴한 목사에게 주어지는 당회장의 권한은?

- 헌법 제47조 6항에 의거하며, 그 당회장의 권한은 전도목사에 준하는 권한으로 한다. **【91-158】**

*** 헌법 정치 제47조 6.**

6. 자원 은퇴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시 당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이미 공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의 경우 공로목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원로목사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공로목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인지요?

- 헌법 정치 제21조 7항에 의거하여 원로 목사가 된다. **【93-183】**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7. 원로목사**

원로목사는 정년 또는 자원 은퇴한 목사이다.

[6] 명예목사의 유예기간이 2009년까지라 함은 그 자격과 권리(호칭과 은봉을 포함)가 2009년까지이고 2010년부터는 그 자격과 권리가 상실되는 것인지

요?

- 명예목사의 자격은 2009년까지 추대할 수 있으며, 그 권리 중 은봉은 계속되나 명예목사의 제도가 2010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목사의 직제 구분이 없어지므로 원로목사가 된다. 【93-183】

[7] 어떤 목사가 명예목사의 자격을 충족시키고 지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2009년에 노회에 청원하였는데, 노회의 일정이 여의치 않아 2010년에 들어서 노회가 허락을 한 경우에 명예목사 자격이 있는 것인지요?

- 헌법 정치, 제21조 6항에 의거하여 명예목사 제도는 2009년까지이다. 【93-183】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6. 명예목사(2009년까지 유예기간으로 한다)**

명예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한 목사가 그 시무를 사임할 때 지교회가 그 공로와 명예를 보존하려고 공동의회의 결의로 은봉을 정하고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으로 추대하는 목사이다. 이 경우 그는 교회의 치리권이 없다.

[7] 무임목사

[1] 무임목사가 대리 당회장, 임시 당회장, 준당회장으로 될 수 있는지?

- 무임목사는 헌법 정치 제10장 제55조 1. 2)에 의해 언권회원이므로 대리 당회장,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없으며, 제9장 제47조 5.에 의해 시무 목사가 아니므로 준당회장이 될 수 없다. 【72-96】

*** 헌법 정치 제10장 제55조 노회의 회원**

1. 2) 무임목사와 정년 은퇴한 목사는 언권만을 가진다.

*** 헌법 정치 제9장 제47조 당회장**

5. 준당회장은 미조직 교회의 당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회가 임명한다. 교회가 치리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아직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1인이 준당회장으로서 당회 사무를 처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단, 재판권은 위탁 판결에 맡겨야 하며 기본재산 처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목사가 건강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계속 무임으로 있거나 3년 이상 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목사직이 자동적으로 해직된다”의 “해직”

은 노회가 해직 결의 절차 없이도 서기가 처리할 수 있는가?

- 위의 질의에 해당하는 목사는 헌법 정치 제4장 21조 8.에 의거하여 노회의 해직 결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해직된다. 그러나 노회 서기가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헌법 정치 제4장 제26조 3.에 따라 처리한다. 즉, 그 목사의 해직 안건을 3년 만기 직전에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가 당사자를 권고하여 사직케 하거나 이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3년 기일이 경과한 후에 자동으로 사직 처리한다. 【68-95】

* 헌법 정치 제4장 제26조 3. 사직

목사가 그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교회 발전에 유익이 없는 줄 알면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처리한다.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리고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처소가 있다고 해도 3년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하여 처리한다.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8. 무임목사

무임목사는 노회가 맡긴 상임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목사가 건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거나 3년 이상 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목사직이 자동적으로 해직된다.

2) 목사의 임직 자격

[1] 군중사관 후보생의 조기 안수 혜택은?

- 목회 경력 2년*이 되지 못했을 때는 그 기간이 되기까지 노회 정회원권을 중지하여 허락한다. 【70-367】

* 3년에서 2년으로 수정(목사임직경력 2년)

[2] 군중사관 후보생이 준목고시에 완전 합격했을 경우 군목 입대 연도가 남아 있는 경우라도 임직할 수 있는지?

- 군중사관 후보생이 준목고시에 합격하고 국방부의 소집 통보가 총회에 접수된 후 노회에 통보되면 심의하여 임직할 수 있다. 【70-43】

[3] 목사 임직 안수시 누가 안수함이 가한지?

- 목사가 안수한다. 【50-61】

[4] 목사의 자격 조항 중 단독 목회 경력 조항 삽입은?

- 각 노회에서 권장하기로 한다. 【68-332】

[5] 신학대학 입학 전 노회 인허 전도사 자격으로 목회한 것은 교역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시무한 것만 목사 임직시 교역 경력으로 인정한다. 【68-330】
- (* 신학대학 졸업 전 노회 고시에 합격한 전도사의 효력은 그 노회에 한한다.)

[6] 신학대학원 재학시 교역 경력은 인정되는지?

- 1986년도 이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신학대학원 재학시 전도사 자격이 있는 신학대학 출신 대학원생이 교역한 것은 인정되나, 전도사 자격이 없는 신학대학원생이 교역하는 것은 교역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헌법 정치 제7장 제39조). 【68-330】

* 헌법 정치 제7장 제39조 전도사

1.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장의 임명으로 지교회를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로서 당회가 허락하면 언권회원이 될 수 있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이 위임하면 제직회의 대리 회장이 되며 예배 인도의 책임도 대행한다.

2.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는 무흠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남녀로서 총회 직영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한다. 기타 신학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총회 직영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3. 전도사의 청빙과 임기

전도사의 청빙은 당회장의 추천으로 당회가 결의하고 제직회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전도사의 임기는 1년이며 계속 시무 절차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찬성으로 하여 매년 시행하도록 한다.

[7] 총회 직속 기관의 유급 직원의 교역 경력 인정은?

- 1. 총회 본부와 교육원의 유급 직원, 총회 직속 기관인 한신대학교 전임 강사 이상의 교수 요원
- 2. 남·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유급 직원
- 3. 노회 남·여신도연합회, 청년회 연합회 유급 직원

4. 중고등학교 성경교사, 기독교연합기관의 유급 직원은 노회가 전도사 자격자로 파송하였을 경우 교역 경력으로 인정한다. 【68-331】

[8] 목사의 자격 중 노회 지도하의 2년 이상의 전담교역이 있어야 하는데 ‘전담교역’의 의미는?

- (1) 헌법 정치 제4장 제20조 2.의 ‘전담교역’의 ‘전담’의 의미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교역에만 전임하는 것을 말한다.
- (2) 총회, 노회 등 기관에 사역하는 것도 목사의 자격에 포함된다.
- (3) 1986년 이전에 한신대학 신학과에 입학하여 후에 졸업한 목사후보생에 대해서는 그 자격이 고시규정 전문에 의거하여 2000년까지 유효하다. 【81-117】

[9]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8. “무임목사는 노회가 맡긴 상임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의 “상임 시무처”란?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1.(담임목사), 2.(동역목사), 3.(전도목사), 4.(부목사), 5.(기관목사)대로 노회가 정식으로 허락 및 파송한 시무처가 상임 시무처이다. 【68-95】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목사의 시무구분과 임기**

1. 담임목사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그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다.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 동역목사

동역목사는 교회 합병으로 다른 목사와 협동 시무하는 목사로서 그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고 순번으로 당회장직을 수행하며 일방이 시무를 사면할 경우 자연 전권으로 시무한다.

3. 전도목사

전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교회 개척에 종사하거나 미조직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시무하는 목사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부목사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중임될 수 있고, 담임 목사 사임시 함께 사임한다.

5. 기관목사

기관목사는 총회, 노회, 관계 기관 및 학교, 군대, 병원 교도소, 산업시설, 복

지기관 등 특수한 분야에서 시무하는 목사다.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10]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과 협력하지 않는 교단(단체)에서 목사안수 위원으로 활동해도 되는지요?

- 활동할 수 있다.

【96-185】

*** 헌법 정치 제4장 제19조 (목사의 직무)**

2. 목사의 성례집행

본 교단 목사는 두 가지 성례전 곧 세례와 성찬례를 당회의 결의 또는 노회의 허락으로 집행할 권한이 있고 새로 세례받은 자들을 지교회에 입적시킬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다른 교파, 교회, 교회연합회, 기타 특수한 경우에 요청을 받으면 자기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한 성례를 집행하거나 참례할 수 있다.

3) 목사 청빙 및 청빙 허락

[1] 청빙받은 목사가 현재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시무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청빙서만 노회 개회 전에 접수하여도 이를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 할 수 있다.

【60-120, 87-299】

[2] 조직교회가 특별한 경우 전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지요?

- 할 수 없다.

【60-120】

[3] 타노회 목사를 청빙시는 지교회 청빙 허락 청원서를 받아 법대로 결의하여 조회서와 청빙서를 소속 노회에 보내서 그 노회가 청빙받은 목사에게 청빙서를 전달하고 이명 증서를 본 노회 서기부에 발송하여 접수되었을 시 어떻게 하는가?

- 그 노회는 다시 모여 그 목사를 받기로 결의하고 취임식을 거행해야 한다.

【60-121】

[4] 목사가 법에 의하여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을 때 노회의 허락없이 교회의 청빙을 받아 시무할 수 있는지요?

- 재판 중에 있는 목사라 하더라도 청빙을 받을 수 있으며 노회가 허락하면 시무할 수 있다. 【72-97】

[5] 행정의 보류를 선언한 상태에서 해 당회장이 타 교회로 청빙되어 이동할 수 있는가?

- 헌법 정치 제4장 제23조 1.에 의하여 노회가 허락하면 이동할 수 있다. 【74-135】

*** 헌법 정치 제4장 제23조 1. 동일노회 목사 청빙**

노회는 제출된 ‘목사 청빙 허락 청원서’를 접수하고 허락할 것을 결의하면 청빙 받는 목사에게 ‘청빙서’를 교부하고 2개월 이내에 취임식을 거행한다.

[6] 기소되어 재판하고 있는 목사를 모교회에서 청빙하고자 하여 공동의회를 할 때 재판 중에 있는 재판국장이 임시 당회장이 되어 공동의회를 주관할 수 있는지?

- 당회가 결의하였으면 재판국장이라도 대리 당회장으로 공동의회를 주관할 수 있다. 【72-97】

[7] 헌법 정치 제4장 제23조 3.(타 교파 목사의 편입)의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개척파 교회”를 어떻게 규정지를 것인가?

- 원칙적으로 세계개척교회연맹(WARC)에 가입한 교단으로 한다. 【59-75】

[8] 헌법 정치 제4장 제23조 3. 타 교파 목사의 편입 란 중 ‘타 개신교파’와 ‘타 교파’를 어떻게 규정지를 것인가?

- 타 개신교파에 대해서는 제59회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세계개척교회연맹(WARC)에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로, 타 교파에 대해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구세군대한본영, 대한성공회, 한국정교회로 한다. 【82-555】

[9] 담임목사의 청빙을 위한 투표는 인준의 투표인지, 선임의 투표인지?

- 인준의 투표이다. 【81-118, 87-299】

[10] 총회 일반회의 규칙 제39조(투표 불참 및 무효표 처리) 3. ‘인준시에는 총투표수에 계산하여 다수에 속한다.’와 4. ‘선임시는 총투표수에 계산하여 반대에 속한다.’에서 “인준”과 “선임”의 의미는?

- 정해진 사람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때는 인준이고 (예. 목사청빙 투표), 다수에서 1인 또는 정해진 수를 투표할 때는 선임이다. (예. 장로선거 투표) 【82-563, 87-299】

[11] 담임목사를 청빙하려고 후보인을 택하기 위하여 당회원이 여러 후보인을 놓고 논의하다가 투표로 결정하자고 하여 투표하였을 시 이것은 ‘인준’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아니면 ‘선임’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 이것은 인준이나 선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 결의로 해석해야 한다. 【82-563】

[12] 목사 청빙 등 인사문제는 어디에서 다루어야 하는가?

- 총회 헌법에는 교역지도위원회가 없으므로 목사청빙 등 인사문제는 정치부에서 다루어야 한다. 【82-162】

[13] 전도목사 계속 시무 청원은 누가 해야 하는가?

- 반드시 대리당회장으로 사회하고 대리당회장 이름으로 청원해야 한다. 【84-108】

[14] 미조직교회가 해 교회 장로후보자가 장로고시에 합격할 것을 전제로 하고 담임목사 청빙 허락 청원서를 제출해 노회는 장로 합격자를 먼저 발표하고 다음 순서로 담임목사 청빙 허락 청원을 허락하는 것이 적법한지?

-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1.에 의거하여 적법하지 않다. 【90-292】

*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1.

1. 조직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당회에서 후보인을 택한 후 공동의 회를 소집하고 투표하여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교회는 재적 입교인 과반수가 날인한 ‘목사 청빙서’와 ‘공동의회록 사본’을 첨부한 ‘목사 청빙 허락 청원서’를 각 2통씩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하고 교인대표는 노회에 출석한다. 단, 미조직 교회가 당회 조직을 허락받고 공동의회에서 장로가 피택되어 고시에 합격하였을 때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15] 노회에서 당회조직 허락을 받은 교회가 본 교단 소속 무임장로를 선출하였을 때 무임장로의 취임을 전제로 한 담임목사 청빙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 【90-293】

[16] 무임장로의 취임을 전제로 한 담임목사 청빙이 가능한지요?

- 노회에서 당회 조직 허락을 받은 교회가 본 교단 소속 무임장로를 선출하였을 때에는 담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할 수 있다. 【90-293】

[17]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지 교회에서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청빙을 하여 목사 임직을 받을 수 있을지?

- 헌법정치 제4장 20조 2항, 24조, 정치치리총람집 2. 목사 2) 목사의 임직 자격 (8)의 해석과 헌법정치 제4장 18조 2항에 따른다.

【92-128】

*** 헌법 정치 제4장 제20조 목사의 자격**

2.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한 준목으로서 노회와 총회 지도하에 2년 이상의 전담 교역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 군목으로 입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헌법 정치 제4장 제24조 목사의 임직**

목사가 될 자격을 갖춘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노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노회의 주관으로 임직식을 거행한다. 임직식의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 헌법 정치 제4장 제18조 목사의 의의 2. 목사의 직분**

목사는 본래의 인간성으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간으로나 일반 신자와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맡은 직책 때문에 일반 신자와 구별된다. 전적으로 교회를 담당하고 성긴다는 의미에서 그 직책은 교회에서 가장 존엄하고 유용한 전문가적 직책이다. (이하 생략)

[18] 총회 산하기관(총회 본부나 총회 교육원 등)이 직원인 준목을 목사임직(안수) 후 기관목사로 청빙하고자 할 때 노회의 목사임직(안수)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헌법정치 제22조 6항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의 결의와 임명권자가 청빙하고, 헌법정치 제24조에 따라 노회의 주관으로 임직식을 거행한다.

【94-194】

4) 담임목사 취임식

[1] 미조직교회에서 장로후보자가 장로고시에 합격하여 장로 임직을 해야되는 데 같은 날 장로임직식과 담임목사 취임식을 해도 되는지?

- 장로 후보자가 노회 장로고시에 합격하였고 다음 노회 시 담임목사 청빙청원이 허락되었으면 장로임직식과 담임목사 취임식을 같은 날 할 수 있다. 【90-292】

[2] 미조직교회에서 장로임직식과 담임목사 취임식을 같은 날 할 수 있다면 장로임직식과 담임목사취임식의 순서는?

- 당회장이 장로임직식을 먼저하고 다음에 노회장이 담임목사 취임식을 해야 한다. 【90-293】

[3] 당회원이 한 명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여 노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이 허락되었는데, 담임목사 취임 전에 장로가 사임하여 당회록에 그 사임이 기록되었는바 담임목사 취임식을 할 수 있는지?

- 담임목사 취임을 할 수 있다. 【91-158】

[4] 노회장이 담임목사 취임식을 집례하고 같은 날 그 담임목사가 장로 취임을 해야 합니까?

- 목사가 장로 취임식을 먼저 하고 같은 날 노회장이 담임목사 취임식을 집례한다. 【90-293】

[5] 장로의 유고로 인한 폐 당회가 된 가운데 그 이후로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조직 교회가 된 경우에 담임 목사 취임식을 거행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경과 한 것에 한 해 해야 하는지?

- 헌법정치 제9장 44조 2항에 의거하여 두 정기노회를 경과하였으면 취임식을 거행해야 한다. 【92-128】

*** 헌법 정치 제9장 제44조**

2. 시무장로가 공석이 되어 폐당회가 되면 즉시 노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정기노회 기간에 재조직 준비를 못하고 두 정기노회를 경과하면 담임목사는 자동으로 전도목사가 되며, 당회 조직 시까지 준당회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장로

[1] 피택된 장로가 피택 6개월 전에 고시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시 청원은 할 수 있으나 피택 6개월 전에 고시를 받을 수 없다.

【71-122】

[2] 장로 정년 은퇴 연한의 기준이 장로의 정년 생일로 하는지, 아니면 해 연도 말일까지 하는지?

- 연도 말일로 한다.

【75-468, 87-299】

[3] 헌법 정치 제5장 제34조 2. “자의 사임 혹은 자의 사직자는 1년이 경과한 후, 본인이 청원할 때”의 문구 중 “자의 사직자”에 자원 은퇴도 포함시킬 수 있는가?

- 자원 은퇴자는 자의 사직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

【86-152】

[4] 헌법 정치 제5장 제35조에 “원로장로는 정년이 되어 은퇴한 장로”로 규정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자원 은퇴한 장로도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가?

- 자원은퇴 장로의 시무경력이 10년 이상일 때에 당회는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86-151, 88-832】

* 헌법 정치 제5장 제35조 원로장로

원로장로는 정년이 되어 은퇴한 장로다. 단, 자원은퇴 장로의 시무경력이 10년 이상일 때에 당회는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5] 헌법 정치 제9장 제44조의 시무장로가 시무 사임하면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준당회장의 임명을 받아야 하는가, 정기노회에 보고해야 하는가?

-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85-149】

* 헌법 정치 제9장 제44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교회회의 치리회로서 담임목사와 시무 장로로 구성하며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조직 성원이 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선정한다.
2. 시무 장로가 공석이 되어 폐당회가 되면 즉시 노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정기노회 기간에 재조직 준비를 못하고 두 정기노회를 경과하면 담임목사는 자동으로 전도목사가 되며, 당회 조직시까지 준당회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 3. 미조직교회가 당회를 조직하려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고 장로를 선출하여 노회의 고시와 임직 후 당회를 조직한다.

[6] 장로 사임 후 두 정기노회 기간을 지나도록 당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그 동안은 당회장인가, 준당회장인가?

- 당회장이다. 【85-149】

[7] 장로 사임 후 두 정기노회 기간을 지나도록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 소집할 수 있다. 【85-150, 88-168】

*** 헌법 정치 제12장 제65조 공동의회 조직**

1. 공동의회는 교인의 총회로써 그 지교회의 무흠 입교인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2.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 헌법 정치 제12장 제66조 공동의회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 2)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8] 장로가 시무 사임서를 제출하였는데, 보류 중에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 장로가 1인일 때는 소집할 수 없다. 【85-150】

[9] 시무장로 사표 제출 중에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공동의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 당회 결의가 없어도 소집할 수 있다.

【85-150, 88-168】

[10] 타 노회에서 이명하여 해 노회의 교회에서 다시 취임하여 시무하는 장로는 임직 일을 타 노회에서 임직한 날로 계산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명하여 해 노회의 교회에서 신임을 받아 취임하여 시무하는 새로운 날을 임직

한 날로 계산해야 하는가?

- 장로는 당회에 속하나 임직은 범교단 차원이므로 임직한 날로 계산해야 한다. 【85-150】

[11] 당회 조직 허락을 노회로부터 받았고 공동의회에서 법 절차에 따라 장로로 피택되었다면 정당한 것인가?

- 정당하다. 【86-152】

[12]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 조직 허락을 받아 장로 후보를 피택하고 노회고시를 치루었는데 이때 피택된 장로 후보가 목사 사모일 경우에 장로 임직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86-152, 88-168】

[13] 배부된 투표용지가 투표하기 전에 투표위원에게 되돌려졌을 때 그 표는 계수하는가, 아니면 계수하지 않은가?

- 투표시 투표함 내에 있는 표는 계수하고, 투표함 내에 있지 않은 표는 계수하지 않는다. 【86-152】

[14] 장로 선출할 때 투표 없이 구두 가부를 물어 선출할 수 있는가?

- 장로 선출은 반드시 투표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로 선출한다.

【88-168】

*** 헌법 정치 제5장 장로 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1. 장로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로 선출한다.
2.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를 조직하고자 하면 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을 때 노회의 허락을 얻어 장로를 선출한다.
3. 장로의 증원은 입교인 20인에 1인 비례로 증원할 수 있다. 장로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4. 사임, 사직, 면직, 전적 등의 사유로 무임으로 있는 자는 다시 선임되고 취임하여 시무할 수 있다. 전입자는 1년 이상 신도로서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자라야 선출될 수 있다.

[15] 헌법 정치 제5장(장로) 제31조(장로의 선출과 임기) 4.에서 “전입자는 1

년 이상 신도로서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자라야 선출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때 전입자는 타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다가 전입 온 자인가, 아니면 무흠입교인으로 있다가 전입 온 자인가?

■ ‘전입자’란 헌법 정치 제5장(장로) 제30조(장로의 자격)에 합한 자를 말한다. 【88-169】

* 헌법 정치 제5장 장로 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4. 사임, 사직, 면직, 전직 등의 사유로 무임으로 있는 자는 다시 선임되고 취임하여 시무할 수 있다. 전입자는 1년 이상 신도로서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자라야 선출될 수 있다.

* 헌법 정치 제5장 장로 제30조 장로의 자격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담전 3:1-7에 해당하고 무흠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16] 본 교단 소속 무임장로가 공동의회에서 시무장로로 선출되었을 때에는 취임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 본 교단 소속 장로이므로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 【90-293】

[17] 장로가 시찰위원장, 노회장, 총회장을 할 수 있는지?

■ 할 수 있다. 【91-160】

[18] 장로 취임 집례를 노회장이 해야 합니까? 그 교회 목사가 해야 합니까?

■ 장로 취임식은 당회의 사항이므로 그 교회 목사가 한다. 【90-293】

[19] 헌법정치 제33조 사임, 사직, 면직 3. 권고사임에서 “시무장로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할 경우 또는 교인의 다수가 그 시무를 원치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의 결의로 사임된다.”는 법을 근거로 공동의회에서 장로 권고사임을 결의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하는 것이 옳은가, 3분의 2로 하는 것이 옳은가?

■ 헌법 정치 제12장 제69조에 의거하여 위 공동의회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다. 【92-128】

* 헌법 정치 제12장 공동의회 제69조 의결 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한다.

4. 전도사 및 목사후보생

[1] 여전도사 채용에 관한 법 준수에 대하여?

- 각 교회로 하여금 준수케 한다(헌법 정치 제7장 제39조 3. 참조).

【68-332】

* 헌법 정치 제7장 제39조 3. 전도사의 청빙과 임기

전도사의 청빙은 당회장의 추천으로 당회가 결의하고 제직회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전도사의 임기는 1년이며 계속 시무 절차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찬성으로 하며 매년 시행하도록 한다.

[2] 시무처를 잃은 해 노회의 전도사 자격은?

- 해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전도사의 자격은 해 노회 내에서는 시무처를 잃었을지라도 자격이 유효하다.

【82-160】

[3] 지교회에서 전임사역을 하지 않고 총회 산하기관(총회 본부나 총회 교육원 등)에서 전임 시무하는 자는 어디에서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노회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운영내규 제7조 2항, 제10조 1항, 치리총람(2009년판 229쪽) 2. 목사, 2) 목사의 임직 자격, [7] 총회 직속 기관의 유급 직원의 교역 경력에 의거하여 총회 산하기관은 해 기관에서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할 수 있고, 소속 노회가 해당 기관을 목회현장으로 허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94-194】

[4] 일반대학 출신자가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할 때, 노회의 목사후보생이 된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험에 합격한 후 노회 목사후보생이 되어야 하는지?

- 헌법 정치 제40조 2항에 의거하여 목사후보생은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신학생들이므로 입학시험에 합격한 후 목사후보생이 되어야 한다. 또한, 치리총람 2. 목사, 2) 목사의 임직 자격, [9]~[10]의 해석과 같이, 타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총회 고시위원회의 위탁교육을 받은 때부터 목사후보생으로 공인된다.

【94-195】

[5] 타 신학대학 및 타 신학대학원생을 노회 목사후보생으로 공인할 수 없는가?

- 없다. 【82-161】

[6] 1) 노회 목사후보생이 아니더라도 준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가?

- 없다.

2) 또한 목사후보생이어야만 할 경우 언제 목사후보생으로 공인해 줄 수 있는가?

- 위탁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이다. 【82-162】

[7] 타 신학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전담교역 경력은 타 신학대학원 졸업 이후인가, 총회 직영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에서 1년 이상 위탁 필수이수과목 24학점을 이수한 이후부터인가?

- 위탁 이수과목 24학점을 이수한 이후부터이다. 【82-162】

[8]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후는 목사후보생이 아닌지, 또한 노회가 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졸업한 이후라도 준목인허 전까지는 목사후보생으로서 계속해서 노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82-162】

5. 당회 · 공동의회

[1] “헌법 정치 제9장 제51조에 있는 「한 지역 안에 둘 이상의 당회가 있으면 유익한 공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다」의 ‘한 지역’에 대한 범위”와 “2개 시찰위원회에 속한 25개 교회 이상이 연합 당회를 조직하고 있는 것이 ‘한 지역’ 범위에 속하는지?”

- 한 지역은 시찰 구역으로 하되 인접한 시찰 구역의 원하는 당회로 한다. 【73-381】

[2] 당회가 선임한 교회재산관리위원장을 임시 당회장 명의로 당회원들과는 협의없이 교체할 수 있는가?

- 당회 결의없이 임시당회장은 교회재산관리위원장을 교체할 수 없다. 【68-96】

[3] 헌법 정치 제9장 제44조의 “두 정기노회를 경과하면 담임목사는 자동으로 전도목사가 된다”라는 내용 중 1회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 정기회는 인사노회를 기준으로 1회기이다. 【84-108】

* 헌법 정치 제9장 제44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교회의 치리회로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며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조직 성원이 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선정한다.
2. 시무장로가 공석이 되어 폐당회가 되면 즉시 노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정기 노회 기간에 재조직 준비를 못하고 두 정기노회를 경과하면 담임목사는 자동으로 전도목사가 되며, 당회 조직시까지 준당회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미조직 교회가 당회를 조직하려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고 장로를 선출하여 노회의 고시와 임직 후 당회를 조직한다.

[4] 어떤 경우 폐당회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담임목사가 취임하기 전에 장로가 사임하여 폐당회되는 경우와 담임목사 취임 후에 장로가 사임하여 폐당회 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

- 헌법 제44조 2항에 근거하여 노회 허락 후 폐당회 효력이 있다.

【91-158】

[5] 당회가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의 내용과 준당회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

는 안건의 내용의 한계는 무엇인지? 헌법 제47조 5항에 준당회장의 직무의 한계(헌법 제45조의 당회의 직무 중 처리할 수 있는 안건과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을 구분)는 무엇인가?

- 권징조례와 재판권 및 기본재산처리는 할 수 없다. 【91-159】

*** 헌법 정치 제47조 5.**

5. 준당회장은 미조직 교회의 당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회가 임명한다. 교회가 처리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아직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1인이 준당회장으로서 당회 사무를 처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단, 재판권은 위탁 판결에 맡겨야 하며 기본 재산 처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노회가 문제 교회의 담임목사와 장로의 신임을 묻기 위해 해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 소집할 수 없다. 【93-185】

[7] 노회가 해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면, 노회의 결의로 구성된 전권위원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

- 공동의회 소집은 헌법정치 제12장 제66조에 의거하여 당회장이 소집하여야 하고, 노회는 헌법정치 제12장 제66조 2항에 의거하여 당회에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93-185】

*** 헌법 정치 제12장 제66조 공동의회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2.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8] 회원이 공동의회에 불참하고 제삼자에게 회원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요?

- 정치 제12장 제67조에 의거하여 공동의회 회원권은 위임할 수 없다. 【93-186】

*** 헌법 정치 제12장 제67조 공동의회 개최성수**

당회는 공동의회 의안, 일시, 장소를 1주일 이전에 공고하고 그때에 회집된 회원수대로 개최한다.

[9] 위임권을 가지고 행사한 공동의회 안건이 결의된 사항이 유효한지요?

- 위임된 회원권이 가부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이면 무효이며, 영향이 없으면 다수표에서 제한다. 【93-186】

[10] 미조직 교회의 “당회 조직 허락”이 임시노회에서 아니 되는지요?

- 헌법 정치 제54조 (노회의 직무) 2. (청원안건)과 4. (사업)에 의거하여 할 수 있다. 【95-166】

*** 헌법 정치 제10장 제54조 노회의 직무**

2. 청원안건 : 각 당회가 규정대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진정, 문의 건 등을 접수 처리한다.
5. 사업 :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 병합, 폐지와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등의 안건을 심의 결정하며, 전도, 교육, 봉사, 재정 관리 등 일체를 지도하며 그러한 사업을 직영도 한다.

[11] 1) 임시당회장이 제직을 임명할 수 있는가?

- 당회가 결의하면 할 수 있다.

【97-177】

2) 임시당회장이 예·결산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 당회가 결의하면 할 수 있다.

【97-177】

3) 교회 재산을 임시당회장 앞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

- 할 수 없다.

【97-177】

*** 헌법 정치 제9장 제45조 당회의 직무 5항 임직**

장로의 임직을 주관하고 집사와 권사를 임명하며, 전도사,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 사찰, 기타 각종 임시 직원들을 임명한다.

*** 헌법 정치 제9장 제45조 당회의 직무 9항 재정 및 재산 관리**

교회의 재정 정책을 수립 감독하여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6. 노 회

1) 노회의 회원

[1] 무임전도사가 노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있는지?

- 헌법 정치 제10장 제55조 4.에 의거하여 초청되지 않는 한 노회의 언권 회원이 될 수 없다. 【82-160】

* 헌법 정치 제10장 제55조 노회의 회원

4. 노회가 초청하는 전도사, 여신도회 대표, 남신도회 대표, 청년회 대표는 노회에서 언권을 가진다.

[2] 목사가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을 때 노회의 회원권이 있는지?

- 당해 안건에 대하여서는 회원권이 정지되며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은 노회가 결의하여야 정지된다(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제98조).

【72-97】

*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제99조 소송 당사자의 회원권 제한

- 어느 치리회를 막론하고 교인이나 직원이 소송 중에 있을 때에는 그 치리회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케 할 수 있다.

[3] 국제협력 선교동역자의 노회 회원권은?

- 헌법 정치 제15장 제79조 1., 2.에 의거한다. 【71-331】

* 헌법 정치 제15장 제79조 국제협력선교동역자

1. 총회는 협약을 맺은 국제협력교회로부터 국제협력선교동역자가 파송되면 먼저 파견서를 접수하고 소정의 준비교육과정을 마친 후에 해당 노회와 기관에 배치한다.
2. 목사인 국제협력선교동역자는 해당 노회의 정회원이 된다. 평신도 국제협력선교동역자는 노회에서 언권회원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고 지교회에서는 교인의 자격과 권리를 갖는다.

[4]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에 있는 전도사들이 노회 준회원 자격이 있는지?

- 헌법정치 제55조 3항에 의거하여 노회의 준회원 자격이 없다.

【94-193】

***헌법정치 제55조 노회의 회원**

3. 준목은 노회 준회원으로 연권을 가진다.

2) 노회의 직무**[1] 헌법 정치 제10장 제54조 9. 3)의 당회나 교인이 교회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직접 청원권은 무엇인가?**

- 헌법에 명시된 모든 청원은 직접 청원권에 속한다.

【69-38】

*** 헌법 정치 제10장 제54조 9. 교회 시찰**

- 3) 지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경유시켜 전달한다. 단, 당회나 교인이 교회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직접 청원권은 침해하지 못한다.

[2] 각종 청원서, 진정서, 소원건, 당회가 처리한 사항에 대한 상회 상소건은 시찰위원회를 경유해야만 하는가?

- 당회나 교인이 청원서, 소원건, 진정서, 상소건 등을 제출하고자 할 때 모든 안건은 반드시 시찰위원회를 경유해야 한다. 시찰위원회는 검토하여 서류 보관을 지시할 수 있으나 사건 내용의 전부를 판단하지 못한다. 만일 시찰위원회가 경유를 거부할 경우 부전지를 부쳐 노회에 직접 제출한다.

【69-38】

[3] 지교회(당회)가 행정 보류를 결의하고 노회의 행정 지시를 받지 않았을 때 (헌법 정치 제10장 제54조 1.) 노회가 해 교회에 행정적 규제를 내릴 수 있는가?

- 지교회가 정당한 노회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74-135】

*** 헌법 정치 제10장 제54조 1. 행정적 총찰**

-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지교회와 목사, 준목, 전도사, 목사후보생 등을 총찰한다.

[4] 교회가 행정을 보류하고 상회비 및 노회 의무금을 불이행했을 때 당회장 및 당회원에 어떤 법적 제재를 내릴 수 있는가? (예 - 노회 정회원 총대 및 기타 회원권의 문제)

■ 해 노회가 결의하여 권한을 중지시킬 수 있다. 【74-135】

[5] 전도사가 노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지?

■ 상정할 수 없다. 【82-160】

[6] 총회에 상소 또는 재심을 청구할 때 노회장 혹은 서기가 노회나 임원회의 결의없이 임의로 서류를 만들어 노회장 직인을 찍어 총회에 접수한 서류를 합법적 서류로 보는가?

■ 노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없이 노회장과 서기가 임의로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당노회의 소관사항이다. 【82-161】

[7] 장로 1인, 목사 1인으로 당회가 구성된 경우 장로에 대한 송사가 있을 시 당회장이 당회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반드시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해야 하는가?

■ 당회 결의없이 당회록을 기록할 수 있으며 당회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한하여 당회 결의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 【82-558】

3) 노회의 회집

[1] 임시노회 회집과 안건은?

■ 헌법 정치 제10장 제58조 2.에 준한다. 【59-76】

*** 헌법 정치 제10장 제58조 노회의 회집**

2. 임시노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목사 2인과 교회가 각기 다른 당회의 장로 2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 통지를 보내고 통지한 의안만 처리한다

[2] 노회 통합의 법적 절차는?

- 규칙 문제가 아니고 헌법 정치 제10장 제53조 및 제11장 제61조 5.에 의하여 합할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각 노회가 합의하고 각 교회에 수의하여 가결한 후 총회에 청원하여 결의되는 대로 총회가 통합한다.

【49-29】

*** 헌법 정치 제10장 제53조 노회의 조직**

일정한 지역 안에 10인 이상의 시무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10인 이상의 장로 총대로서 총회의 허락을 얻어 조직한다. 총대 장로 수는 매 당회 1인을 원칙으로 하나 전년도 통계 보고에 의한 무흠 입교인 200명 이상 되는 교회나 시무 목사 2인 이상 되는 교회는 2인으로 한다. 단, 무흠 입교인 200명 이상이 있는 교회가 시무 장로 6인 이상이면 3인까지 총대 장로를 파송할 수 있다.

*** 헌법 정치 제11장 제61조 5. 노회 관할**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그 구역을 정한다.

[3] 임시노회 소집은 누가 하는가?

- 임시노회 소집은 노회 규칙에 의해 노회장 또는 대리자가 소집한다.

【83-177, 87-300】

4) 기 타**[1] 교회 수습 전권위원들이 문제된 교회 수습을 위해 총회 헌법 및 노회 규칙을 유안하면서라도 교회 수습을 할 권한이 있는가?**

- 총회 헌법은 유안할 수 없고, 노회 규칙은 해 노회가 유안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으면 할 수 있다.

【67-106】

[2] 노회 수습 전권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처리되어진 안건은 노회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보고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회에 청원하여 심의 결의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 전권위원은 처리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67-106】

[3] 전권위원의 권한과 한계는?

-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의 범위 안에서 위임하여 준 권한 안에서 처리한다. 【67-106】

[4] 총회 산하 단체인 남신도회전국연합회 임원직에 은퇴장로가 직을 맡을 수 있는지?

- 남신도회전국연합회의 규칙에 의하되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은퇴 장로도 임원직을 맡을 수 있다.(헌법 정치 제1장 제6조, 제2장 제12조) 【67-106】

*** 헌법 정치 제1장 제6조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품, 자격, 권위, 선거, 임직에 관한 규례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어떤 회에서든지 직원을 선거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1. 교회의 항존 직원은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이다. 교회는 그 밖에 준목, 전도사, 서리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시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

[5] 총회 산하 단체의 임원의 자격에 대한 문의

- 산하단체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그 단체의 일이므로 자체 규정대로 하며,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자체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78-260】

[6] 미조직교회 목사(준당회장)가 노회에 총회 헌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 정치 제9장 제47조 당회장 5.에 의거하여 제출할 수 있다. 【89-154】

*** 헌법 정치 제9장 제47조 당회장**

5. 준당회장은 미조직 교회의 당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회가 임명한다. 교회가 치리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아직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1인이 준당회장으로서 당회 사무를 처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단, 재판권은 위탁 판결에 맡겨야 하며 기본 재산 처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7] 헌법 제54조 노회의 직무 중 ‘제2항’, “각 당회가 제출하는 안건들(헌의, 청원, 진정, 문의 건 등)을 접수 처리한다”에서 각 당회가 노회에 헌의, 청원을 할 때 당회가 모이지 않고 준당회장이 직접 안건을 노회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 할 수 있다.

【91-159】

*** 헌법 정치 제54조 2. 청원 안건**

각 당회가 규정대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진정, 문의 건 등을 접수 처리한다.

7. 총 회

[1] 분립 노회 소집은 누가 하나?

- 분립 노회 소집은 총회 결의로 총회장이나 분립위원이 할 수 있다. 【63-132】

(* 분립위원은 총회가 정한 분립위원을 의미함.)

[2] 총회에 제출된 ‘노회조직 청원서’의 처리는 어떻게 할지?

-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청되지 않은 ‘노회 조직 청원서’는 헌법 정치 제11장 제61조 2. 및 5. 에 따라 반려한다. 【77-191】

* 헌법 정치 제11장 제61조 총회의 직무

2. 의안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상고, 소원, 문의, 위탁판결 등의 각 안건들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5. 노회 관할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그 구역을 정한다.

[3] 노회 분립시, 기존 노회 임원의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전원 개선해야 하는 지?

- 노회 분립으로 헌법 정치 제11장 제61조 5.에 의하여 새 노회들이 설립 되므로, 분립 이전의 기존 노회 임원의 기득권은 상실된다. 그러나 각자 노회의 결의로 기득권을 인정하고 결원만 보선(선출)하는 것은 그 노회의 자유이다. 【80-152】

* 헌법 정치 제11장 제61조 5. 노회 관할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그 구역을 정한다.

[4] 회원이 아닌 자는 그 회의 의장이 될 수 없는데, 노회 분립위원이 분립 노회에 참석하여 의장으로서 사회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당선 선포를 할 수 있는지?

- 노회 분립의 관할권은 총회에 있다.(헌법 정치 제61조 5. 노회 관할) 따라서 총회의 노회 분립위원은 총회가 선임, 파송하여 노회를 분립하고

설립하는 일을 맡겼으므로 할 수 있다.(참조: 「정치·치리 총람집」 7-[1])

[5] 노회분립 헌의 정족수는?

- 노회분립 헌의는 총회에 청원한 안건이므로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83-605, 87-300】

[6]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총회가 그 심의를 유보하였을 경우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유효한지?

- 유효하다.

【89-155】

[7] 후보 등록 전에 총회 총대였던 자가 등록 후 무임목사가 되었을 때 총대 자격이 있는지?

- 총대 자격이 없다.

【89-155】

[8] 총회시 결정된 안건심의부 부장이 유고될 경우 해당 노회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실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 될 수 없다.

【91-161】

[9] 총회시 보고하여 결정된 안건심의부 부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충원을 해야 하나요?

- 충원할 수 없다.

【91-161】

[10] 총회 유지재단 관리세칙 제5조 2항의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에 등록하는 목사, 장로는 소속 교회의 재산이 총회 유지재단 또는 노회 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헌법에 명시된 회원권을 제한하는 것이 기본적인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총회 유지재단 유지관리 세칙 제5조 2항과 관계없이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재단 관리세칙 제5조 2항은 제92회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따라야 한다.

【93-185】

[11] 총회에서 헌법위원회에 연구를 위임한 안건에 대하여 연구를 위임한 것이니 개정하기로 한 안건과 현행대로 하기로 한 개정안도 같이 현의하여 그

이유를 제안설명 하고 같은 절차로 의결해야 각 법규가 명시한 개정 절차에 맞는 것으로 보는데, 총회에 연구결과만 보고하고 현행대로 하기로 한 개정안을 현의하지 않은 것은 법제부와 총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요?

- 총회규칙 제13조 1항, 헌법위원회 규정 제1장 제2조에 의거하여 헌법위원회는 총회가 연구하도록 위임한 안전에 대하여 연구결과 개정이 필요한 것은 개정 절차를 따라 총회에 현의안으로 제출하고 연구결과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헌법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보고함으로 총회에 제출하는 것임으로 법제부와 총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94-194】

[12] 1) 2009년 12월 은퇴하는 장로가 제94회 총회 부총회장에 후보등록이 가능한지요?

-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2) 후보등록이 가능하다면 임기는 언제까지 인가요?

- 장로의 정년은 헌법정치 제12조 교회의 직원, 2항과 치리총람 3. 장로 [2]에 따라 70세 정년이 되는 해 연도 말일이다.

3) 관리헌법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2항에 의해서 부총회장의 자격이 12월 말로 종료되는데 남은 임기는 어떻게 하나요? 부총회장 보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석이 되는 것인지요?

- 보선 규정이 없으므로 공석이 된다.

4) 이런 상황에 후보자가 등록이 가능합니까?

- 가능하다.

5) 총회장 후보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부총회장 후보와 동일하다. 【94-195】

[13] 총회실행위원이 헌법질의를 할 수 없는가?

- 헌법질의를 노회와 상임 위원회 결의(회의록 첨부)로 질의할 수 있으며, 그동안 관례적으로 헌법위원들의 개인 질의를 허용했으나, 지난 제93회 총회의 결의(93-64)에 따라 개인은 질의를 할 수 없다. 【94-195】

[14] 1) 제95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대가 20명 이상인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의 여성총대를 파송하여야 한다.’에서 20인 이상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이라는 뜻은 노회원 20명 당 1명씩 비율로 늘어나는 것인지, 여성총대 목사, 장로가 각 1인 이상이 되면 되는 것이지요?

- 총대가 20명 이상인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이 포함 되면 된다. 【96-184】

2) 노회 안에 총대로 파송할 여성 회원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 총회 규칙 제5조(회원)에 의하여 노회는 여성 총대를 파송하여야 한다. 【96-184】

*** 총회 규칙 제2장 제5조 (회원)**

1. 정회원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각 노회로부터 파견된 총대를 회원으로 하되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하고 당해년도 상회비와 한신대학교 신학교육발전 의무헌금 완납 노회 납부노회 총대 중에서 총대 점명 후 회원권이 발동한다. 각 노회의 총대 파송 비율은 전년도 통계보고에 의하여 무흠 입교인 500명마다 목사, 장로 각 1인씩으로 하고, 250명 이상의 단수에 대해서는 1인씩 추가할 수 있다. 단 총대가 20명 이상인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이상의 여성총대를 파송하여야 한다. 총회는 목사인 국제협력선교동역자를 정회원으로 할 수 있다.

8. 헌법 개정

[1] 노회 수의 처리방법은?

- 헌법 정치 제16장 제81조 3, 제82조 2의 명문 규정에 따라 투표함이가하다. 【83-177】

* 헌법 정치 제16장 제81조 교리헌법 개정

3. 개정안은 노회수의 3분의 2와 모든 노회 총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또 본 조항을 개정하려고 할 때도 이에 준한다.

* 헌법 정치 제16장 제82조 관리헌법 개정

2.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모든 노회 총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9. 공천 관계

[1] 기왕의 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는 위원이 총회의 공천위원이 될 수 있는지?

- 될 수 있으나 총회 공천위원회 규정 제5조 3.에 의하여 현재 맡고 있는 위원직은 사임하여야 한다. 【72-98】

*** 공천위원회 규정 제5조 (공천업무)**

3. 각 노회에서 파송되는 공천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는 업무만 맡을 수 있으며 기존의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2] 노회 분립에 따른 총회 실행위원회 위원 및 타 위원회의 위원을 즉시 선정할 수 있는지?

- 분립된 두 노회는 총회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각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노회장이 장로일 경우 : 노회장, 목사 부노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나 총회의 타 위원은 다음 총회 때 배정하여 선출한다.

【72-98, 88-836】

[3] 총회 규칙 제7장 제18조 6.의 「총회 산하 유급 실무 직원은 총회 총대와 총회의 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단, 재단 이사는 예외로 한다.」에서 총회 총대와 총회의 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하는 총회 산하 유급 실무 직원의 범위는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가?

- 총회 예산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기관(예 - 현재는 총회 본부, 총회 교육원)이다. 【73-147】

[4] 총회 위원회 위원에 목사나 장로가 아닌 이도 위원이 될 수 있는지?

- 총회 위원회 위원에는 목사, 장로를 원칙으로 하나 특수 부분에는 목사, 장로가 아니라도 위원이 될 수 있다. 【50-60】

[5] 은퇴목사가 노회 상비부서에 들어갈 수 있는지?

- 공천할 수 없다.

【63-131】

[6] 공천위원의 임기는?

- 노회에서 선임한 첫 공천위원회 정기회로부터 2년 후 공천위원회 정기회 직전까지이다.

[7] 1인 1부서 공천 원칙은?

- 1인의 대내, 대외 1부서에 봉사할 수 있게 하고 연임도 할 수 있다.

【68-332】

[8] 헌법위원회 위원 및 재판국 국원의 공천 원칙은?

- 1인 대내외 1부서 공천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책임자를 공천할 수 있다.

【68-332】

[9] 은퇴목사, 무임목사, 교역자가 없는 교회의 장로가 생활보장제 의무금을 감당하지 않아도 공천될 수 있는지?

- 공천될 수 있다.

【72-96】

[10] 무임목사는 공천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무임목사는 회원 자격을 요하지 않는 부서에는 될 수 있다.

【72-403】

[11] 대내외 부서의 총회장과 총무에 대한 당연직 공천 범위는?

- 총회장은 총회 규칙 제3장 제7조 1. 2)에 의하며, 총무는 직책상 위원 (예- 총회 유지재단이사회)일 경우와 대외기관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되 그 외의 대내외 부서의 위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76-226】

*** 총회 규칙 제3장 제7조 (임무) 총회장**

- 2) 총회의 모든 부, 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의하며 지도할 수 있다. 총회장은 임기 중 실행위원회 위원장, 직책상 위원 및 대외관계 위원직을 제외하고 위원이 되지 못한다.

[12] 대내외 위원 및 이사가 은퇴와 정년이 되었을 경우,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정년이 되었을 경우에 공천될 수 있는지?

-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공천될 수 없으며 은퇴하였을 경우에 사임은 사무적으로 후에 처리하되 위원직을 정지케 하고 공천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해 새 위원을 선정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76-226】

[13] 질병으로 은퇴한 사람이 총회 기구의 위원이나 이사를 맡을 수 있는지?

- 폐질로 인하여 은퇴한 사람은 그 직(위원, 이사 등)을 맡을 수 없다(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8.).

【80-150】

*** 헌법 정치 제4장 제21조 7. 원로목사**

원로 목사는 정년 또는 자원 은퇴한 목사이다.

[14] 이해 당사자가 총회 해당기구의 위원이나 이사를 맡을 수 있는지?

- 일방적 손해자와 규정에 있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기구의 위원이나 이사를 맡을 수 없다.

【80-151】

[15] 생활보장제 손해자가 부정 손해로 고소되어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의해 부정 수령금액의 반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노회의 각 위원회 활동과 총회 위원으로 될 수 있는지?

- 총회 재판국 판결대로 해 위원회에서 환수할 일이며, 노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자격 유무는 해 노회가 결정할 일이다.

【80-152】

[16] 재판국 구성 공천에서 “한 노회에서 2인 이상 선임될 수 없다”는 의미는?

- 반드시 1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81-490】

[17] 총회가 한신학원이사회 이사로 파송하지 않은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 선임할 수 없다.

【84-108】

[18] 정년(70세 이상)이 된 사람이 공직에 선임될 수 있는지?

-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교회의 직원) 2.에 의거하여 선임될 수 없다. 단, 총회가 인준한 한신학원이사회가 해당 정관에 의해 시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참조 : 총회 규칙 제6장 제13조 15.-6)).

【84-108】

* 헌법 정치 제2장 제12조 교회의 직원

2.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시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

* 총회 규칙 제6장 제13조 15. 한신학원이사회

6) 소정의 정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9] 총회 감사가 안건심의부의 부장이나 부원 및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이 될 수 있는가?

- 될 수 없다. 【86-151】

* 총회 감사 규정 제2장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회 산하 모든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한 태도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20] 총회 산하기관 직원은 총회 공천위원이 될 수 있는가?

- 될 수 없다. 【86-152】

[21] 1) 대내, 대외 위원 및 이사가 임기 중 그 직을 사임하고 그 후 새롭게 공천된 위원 및 이사가 잔여기간 동안 그 직무를 이행한 경우에 이를 초선으로 간주하는가?

- 초선으로 간주한다. 【88-848】

2) 만일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활동한 직무를 초선으로 인정할 경우, 4년 임기 중 1년 미만의 잔여임기를 마치고 재 공천되었을 때에 연임으로 간주하는가?

- 연임으로 간주한다. 【88-848】

3) 연임 후에 또 다시 공천될 경우 삼선으로 간주하는가?

- 삼선으로 간주한다. 【88-848】

[22] 총회 공천시 1인이 대내외 각 1부서 이상 공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헌법위원회, 재판국, 선거관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구애

받지 않는데, 각 노회 생활보장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생활보장제위원회’나 각 노회 국제협력선교위원장(혹은 해당 부서장)으로 구성되는 ‘국제협력선교위원회’도 대내외 1인 1부서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가?

- 대내외 1인 1부서 원칙에 구애받는다. 【88-173】

[23] 총회 공천위원회 위원이 해 노회 생활보장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당연직으로 공천되는 ‘생활보장제위원회’나 해 노회 국제협력선교위원장(혹은 해당 부서장)으로 선임되어 당연직으로 공천되는 ‘국제협력선교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 공천위원회 규정 제5조(공천업무) 3. 에 의거하여 총회 공천위원회 위원은 총회 공천위원회 위원 이외에 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88-173】

*** 공천위원회 규정 제5조 공천업무**

3. 각 노회에서 파송되는 공천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는 업무만 맡을 수 있으며 기존의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24] 각 노회 ‘생활보장제위원회’나 각 노회 ‘국제협력선교위원회’도 대내외 1인 1부서 공천 원칙에 적용되는지?

- 대내외 1인 1부서 공천 원칙이 적용된다. 【88-848, 89-155】

[25] 총회 위원회(이사회 포함)의 위원회 추천위원 공천은 총회 전 회의에서 추천하여 공천위원회에 공천을 요청하는지 아니면 총회 후에 모이는 첫 번째 회의에서 추천하는지?

- 위원회 추천위원은 총회 전에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공천위원회에 공천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89-155】

[26] 총회 안건심의부장으로 선출되어 자동적으로 위원회에 공천된 사람의 경우, 1인 1부서 원칙에 구애를 받지 않는지?

- 각 위원회 규정(신도위원회 규정 제3조, 선교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자동 공천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인 1부서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다. 【92-124】

[27] 위원장을 선임할 때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 경우, 잔여 임기가 1년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 잔여 임기 동안 선임할 수 있다. 【92-124】

[28] 총회 후에 모이는 정기실행위원회까지 조직되지 않은 상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총회에 준하는지, 해당 상임위원회 정기회에 준하는지요?

-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정치치리총람집 11.기타 [7]항과 헌법위원회 규정 제3장 회의 제6조의 의거하여 해 상임위원회 정기회에 준한다. 【92-182】

[29] 총회 본회의에서 공천위원회에 재공천을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재공천 할 수 있는지요?

- 공천위원회는 공천위원회 규정 제2조 (목적)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맡겨진 공천 사무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회가 최고 의결기구로서 공천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본회가 직접 재공천 하였다 하더라도 절차의 문제가 없다. 단, 총회가 공천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다루는 것에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회부 동의를 구하여 처리할 수 있다. 【93-183】

[30] 총회 상임위원회 위원 중, 잔여 임기가 남아 있는 위원을 변경할 시, 해 노회 공천위원이 당사자의 사임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해 노회 공천위원의 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사임서를 받아야 하며, 해 노회 공천위원의 권한으로 변경할 수 없다. 【95-167】

10. 권 징

[1] 총회 폐회 후 총회 본부에 접수된 재판건은 직접 총회 재판국으로 이관하는지, 아니면 총회 실행위원회를 경유하여 재판국에 맡겨지는지?

- 반드시 총회 실행위원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가 위임한 사건을 심리 판결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따라서 총회 폐회 기간 중에는 총회를 대행하는 총회 실행위원회의 위탁이 필요하다.(헌법 권징조례 제8장 제2절 제81조)

총회 규칙 제10조(실행위원회) 및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제5조(임무) 2.에 의거하여 총회 실행위원회는 총회를 대리하여 접수된 재판건을 총회 재판국에 위탁하되,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할 수도 있다.

1. 제소의 사안에 따라서는 화해시킬 수 있다.
2. 제소의 사유가 권징의 취지에 뚜렷하게 위배되거나, 당사자는 물론 교회에도 덕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이를 반려할 수도 있다. 총회 실행위원회의 처리에 불복이 있을 때는 당사자는 부전하여 다음 총회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69-38】

* 헌법 권징조례 제8장 제2절 제81조 총회 재판국의 임무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건을 심리 판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총회 규칙 제10조 (실행위원회)

총회 운영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회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며 사업을 종합적인 계획 아래 운영하기 위하여 총회 폐회 기간 중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그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제5조 (임무)

2. 총회가 맡긴 업무와 다른 부서에 관계되지 않은 돌발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1) 재판중에 있는 피고에게 노회의 결의도 없이 재판국이 다른 고소인의 제소를 병합·분리 심리할 수 있는지?

- 할 수 없다.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위임받은 사건을 심리·판결한다.(헌법 권징조례 제8장 제1절 제76조 노회 재판국의 임무)

*** 헌법 권징조례 제8장 제1절 제76조 노회 재판국의 임무**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위임받은 사건을 심리·판결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2) 임시 당회장이 당회와 노회의 기소 여부 처리도 없이 노회 재판국에 직접 기소할 수 있는지?

- 할 수 없다. 노회 재판국은 상설 기구가 아니라 노회가 위임한 사건의 처리와 보고로 끝나는 한시적 기구다(헌법 권징조례 제2장 제14조 기소의 결정 1.).

***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제14조 기소의 결정**

1.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된 때에는 처리회는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총회 폐회시에는 기소 결정권이 총회 실행위원회에 있는지? 총회 재판국에 있는지?

- 접수 여부는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나 기소 결정권은 재판국에 있다(헌법 권징조례 제2장 제14조 1., 2.,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제2조, 제5조 2.). 【75-171】

***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제14조 기소의 결정**

1.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된 때에는 처리회는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처리회가 권징의 필요를 인정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어도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 본 항의 기소가 결정된 때에는 처리회는 기소위원을 선임하여 원고로서의 임무를 수행케 한다.

***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제2조 목적**

본회는 총회 운영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회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며 사업을 종합적인 계획 아래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제5조 임무**

2. 총회가 맡긴 업무와 다른 부서에 관계되지 않은 돌발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교인이 당회, 시찰위원회, 노회 경유없이 총회에 직접 상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 제출할 수 없다. 반드시 노회를 경유해야 한다. 단, 노회가 거부할 시는

부전지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헌법 권징조례 제5장 제55조).

【75-171】

*** 헌법 권징조례 제5장 제55조 상소의 방식**

상소를 하려는 자는 판결을 한 처리회에 상소장과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원심 재판이 노회일 경우 노회에 상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교인이 직접 총회에 상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 할 수 없다. 반드시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권징조례 제5장 제55조).

【75-371】

[6] 원고가 목사를 피고로 고소 또는 고발시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제11조, 12조에 의하여 고소장, 최종 설명서 및 증거, 증인 등을 작성하여 헌법 정치 제10장 제54조 9. 3)에 의거 해당 시찰위원회를 거쳐 노회에 제출할 고소건은 당회를 경유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 헌법 정치 제4장 제26조 2.와 제10장 제54조 6.에 의거하여 반드시 당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76-371】

*** 헌법 정치 제4장 제26조 2.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의 제출은 재적 무흠 입교인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 진정서로 제출하되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당회와 시찰위원회를 경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회나 시찰위원회가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직접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

*** 헌법 정치 제10장 제54조 6. 권징**

지교회가 제출하는 소송, 상소, 소원, 위탁 판결 등에 관한 일들을 처리하며 교회 권징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한다.

[7] 고소장 양식은 참고 사항인지 아니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 헌법 권징조례 제3장 제21조 3.과 제22조 2.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이 있다.

【76-371】

*** 헌법 권징조례 제3장 제21조 피고의 이의**

3. 고소 또는 고발장과 최종 설명서가 양식대로 되지 않거나 법의 적용에 잘못이 있을 때

*** 헌법 권징조례 제3장 제22조 이의에 대한 결정**

2. 이의가 이유 없을 때에는 이의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

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 1) 재판의 합법적인 개정을 위한 연기
- 2) 소송의 각하
- 3) 고소(고발)장의 정정 또는 보완의 시기

[8] 노회의 초청언권회원이 노회 결의에 대하여 소원을 낼 수 있는지?

- 할 수 없으며 소원서를 직접 총회에 제출할 수 없다. 【72-404】

[9] 노회에서 권징조례에 의해 판결한 것은 소급 취소할 수 있는가?

- 법적으로 판결한 것은 소급 취소할 수 없다. 【73-381】

*** 헌법 권징조례 제6장 제62조 재심청구**

제1심 또는 상소심에서 유죄 판결된 사건의 증거 조사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 임이 드러났거나 판결한 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상소기간 만료에 관계 없이 판결한 치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 권징조례 제6장 제63조 재심의 청구 기한**

재심은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10] 본 교단의 해노회에서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제1절 제102조와 제11장 제2절 제108조에 의해 목사직을 면직당하여 타 교단에 가입하였다가 해벌 받지 않은 채 타 노회에 가입하여 시무할 수 있는지?

- 1) 헌법 권징조례 제10장 제97조의 「해벌은 책벌받은 자의 관할 치리회가 시행한다」에 의하여 해 노회에서 해벌하여야 한다.
- 2) 해벌받은 후에는 본 교단 내 타노회에도 가입하여 복직할 수 있으며 인수례 없이 임직식을 하여야 한다(헌법 정치 제4장 제28조 4.).
- 3) 시무는 복직 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헌법 권징조례 제10장 제95조 1., 2.). 【73-147】

***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제1절 제102조 직원의 면직처벌**

직원이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제2절 제108조 관할 이탈 목사의 처리**

현저한 범과없는 목사가 본 교단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무단

으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증서없이 타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를 노회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 교파에 가착수한 송안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또는 출교도 할 수 있다.

*** 헌법 정치 제4장 제28조 목사의 복직**

5. 사직 목사의 복직을 허락할 때에는 안수례없이 임직 때와 같이 서약을 한다.

*** 헌법 권징조례 제10장 제96조 면직의 해벌 및 시무**

1. 면직의 해벌로 복직된 자는 3년이 경과해야 시무할 수 있다.
2. 전항의 시행에는 시무 청빙 또는 시무 신임을 요한다.

[11] 노회를 거쳐 제출된 산하단체의 업무에 관련된 소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산하단체의 업무는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제67조에 의거하여 소원의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반려한다.

***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제67조 소원의 사유**

소원은 당회나 노회가 그 소관인 행정사항의 결정이나 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결정이나 처리가 위법이 된 때에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소속교인, 치리회원, 또는 치리회가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

[12] 당회가 청원한 위탁판결은 당회 판결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회의 제2심 판결 효력을 가진 것인지?

- 위탁 판결 및 직할 판결은 그 사건의 상소심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52조) 따라서 제2심의 판결 효력을 갖는다. 【80-153】

*** 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52조 위탁판결 등의 효력**

위탁 판결 및 직할 판결은 그 사건의 상소심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3] 재심청구의 기각은 재판의 판결로 볼 수 있는지?

- 원심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판결로 볼 수 있다. 【80-153】

[14] 원심 판결 통보 후 20일 이내에 재심 청원을 하고 그 재심 청원이 기각된 사건의 상소기간 기준은 원심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인지, 재심 청원

기각 통고 받은 날로부터 20일인지?

- 재심 기각 통고받은 날부터 20일이다. 단, 재심 내용에만 한한다.

【80-153】

[15] 총회 재판국의 최종 판결이 있는 후 총회에서 채택되기까지 그 판결의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 판결한 총회 재판국이 채택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즉시 유효하다.

【82-160】

[16] 총회 재판의 판결 효력의 시기는?

- 판결한 총회 재판국이 당사자에게 통보한 즉시 유효하다. 【82-558】

[17] 재판 판결은 언제 시행해야 하는가?

- 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48조에 의거하여 즉시 시행해야 한다.

【84-108】

*** 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48조 판결의 확정**

1. 당회 재판, 노회 재판의 판결은 상소 기간의 경과 후 즉시 확정된다. 단, 상소가 기간 내에 제기된 때에는 그 확정이 정지된다.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채용 즉시에 확정된다.
3. 교회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는 사회 법정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8] 총회가 채택하여 확정된 총회 재판국 판결을 당사자인 노회, 당회 또는 개인이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 헌법 정치 제8장 제43조에 의거하여 권징해야 한다. 【82-558】

*** 헌법 정치 제8장 제43조 치리회의 권한**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만일에 불복하거나 범법한 자가 있다면 교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되 최종의 중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나 회개하지 않는 자를 출교시키는 일이다.(마 18:15-20, 고전 5:1-5) 치리회는 성서의 권위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여 책벌하며, 교회의 규례와 헌법을 범한 자를 소환하여 심사하기로 하며, 본 교단 관할 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각 치리회는 헌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9] 총회에 상소심 재판 판결을 요청하는 것을 총회 실행위원회의 접수 없이 총회 상설 재판국이 직접 접수, 심리 판결할 수 있는가?

-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심리, 판결하는 기관이므로 할 수 없다. 【82-161】

[20] 상설 재판국이 심리 판결한 문건을 총회에 보고하였을 때 총회가 삭제 결의한 것을 새로 조직된 상설 재판국에 위임, 혹은 계류시키지 않은 것을 심리할 수 있는가?

- 제81회 총회가 결의한 내용인 즉, 재판국 구성에 위법이 있으므로 해당 안건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그 재판국이 주문한 판결 내용을 삭제한 것이므로 이 안건을 계류안건으로 보고 새로 구성된 재판국이 심리할 수 있다. 【82-160】

[21] 헌법 권징조례 제3장 제25조의 내용 중 “변호인”은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이면 누구든지 선임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선임대상이 될 수 있다. 【86-152】

*** 헌법 권징조례 제3장 제25조 변호인의 선임**

1. 원고나 피고는 본 장로회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1인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당회와 노회의 재판은 해 노회 내의 목사·장로 중에서, 총회의 재판은 교단 내의 목사·장로 중에서 각각 선임해야 한다.
3. 변호인을 선임한 때에는 변호인 선임 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2] 정년이 지난 목사, 장로도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가?

- 선임될 수 있다. 【86-152】

[23] 총회 재판국 판결문 주문에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한 것은 적법한가?

- 적법하지 않다. 【87-191】

[24] 총회 헌법 정치 제16장 제80조 3.에 의하면 총회 폐회 동안에는 총회 헌법위원회가 헌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총회 재판국도 총회 헌법 해석을 할 수 있는가?

- 재판국은 양심에 따라 총회 헌법과 규칙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으나, 헌법 정치 제16장 제80조 3.에 의거하여 총회 헌법과 규칙에 대한 해석은 헌법위원회의 임무이다. 【87-192】

***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 개정 제80조 헌법위원회**

3. 헌법위원회는 총회 폐회기간 동안 헌법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

[25] 피고가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제6조 2.에 의거하여 재판위원 기피신청을 적법하게 냈을 때 재판국이 심의와 기각 여부의 결정과 통고도 없이 심의 종결하여 판결할 수 있는가?

- 헌법 권징조례 제1장(총칙) 제7조(기피에 대한 처리)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88-169】
- (* 편집자주 : 고소 고발 건에만 한정된다.)

***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7조 기피에 대한 처리**

1. 재판 위원 의 기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재판회는 기피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재판회는 기피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그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재판 위원을 교체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6] 재판국이 단 한차례의 재판에도 피고인측에 증거 제시와 참석 통보도 없이 원고측의 증언에만 따라 한 재판이 합법인가?

- 재판회는 반드시 헌법 권징조례 제3장(소송절차) 제20조(심리의 절차) 대로 재판하여야 한다. 【88-170】
- (* 편집자주: 고소, 고발 건에만 한정된다.)

*** 헌법 권징조례 제3장 소송절차 제20조 심리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단, 원고가 소송 계류 중에 관련 사건에 관한 유인물을 유포하면 그 건은 기각할 수 있으며, 피고가 유인물을 유포하면 재판국은 처벌할 수 있다.

1. 고소 또는 고발장 및 죄증 설명서와 낭독
2. 기소이유의 설명
3. 원고 및 피고의 심문
4. 증거의 채택과 조사
5. 변론

6. 판결

[27] 1) 교인들이 해 시찰위원회의 시찰위원장인 당회장에 대한 해약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진정인들이 부전지를 부쳐 노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재판국이 이에 대한 판결에서 경유 심사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 적법한 처리인가? 이는 헌법 정치 제10장 제54조 9. 3)의 조문에 위배되는 판결이 아닌가?

- 헌법 정치 제4장(목사) 제26조(목사의 시무 사임, 사직, 면직) 2.(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에 합하는 해약 청원서는 유효하며, 헌법 정치 제10장 제54조(노회의 직무) 9.(교회 시찰) 3)은 준수되어야 한다. 【88-171】

*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6조 목사의 시무 사임, 사직, 면직

2.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의 제출은 재적 무흠입교인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 진정서로 제출하되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당회와 시찰회를 경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회나 시찰회가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직접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

*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54조 노회의 직무 9. 교회 시찰

- 3) 지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경유시켜 전달한다. 단 당회나 교인이 교회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직접 청원권은 침해하지 못한다.

2) 서류심사의 대상자가 심사자로 되었을 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가?

- 해약 청원서의 대상자가 서류심사자일 때 제척사유가 된다.

【88-172】

[28] 개 교회의 장로선출에 대한 공동의회의 결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회나 총회 재판국이 공동의회의 결정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 있는가?

- 교회에서의 불법한 결정과 선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다시 고쳐져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순결과 평화를 위함이며 교도하기 위함이다(참조 : 헌법 정치 제1장 교회 정치 원리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88-172】

* 헌법 정치 제1장 교회 정치 원리 제3조 교적

어느 교파나 교회 단체든지 교회 정치 제도와 교인의 입회 규칙 및 교역자와

교인의 자격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정 선포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하거나 해이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의 권리를 오용한 것일 뿐, 그것으로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향유하는 보호와 안전 이상의 아무 도움도 요구하지 않는다.

*** 헌법 정치 제1장 교회 정치 원리 제5조 교리와 법규**

이상의 원칙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교회는 교인과 교역자의 건전한 신앙 지도를 위하여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좋은 성품과 생활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이해에 대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지교회는 교리와 법규에 따라야 한다.

*** 제7조 치리권**

교인에 대한 치리권 행사는 온 교회가 하든지 택하여 세운 대표로 하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뜻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서는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임을 어느 치리회든지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양심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치리회의 모든 결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 곧 성서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치리회가 인간성에 따른 약점 때문에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제정된 법을 경시하거나 경솔하게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법은 신중히 제정하여야 하며, 일단 제정된 법은 그 법이 절차를 따라 개정되기까지는 준수되어야 한다.

*** 제8조 권징**

위에 적은 성서적이고 합리적인 원리들이 올바르게 준수되고 권징이 엄격하게 실시된다면 교회는 영광과 복락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국법상의 징벌이 아니고 도덕적이며 신령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권징 자체의 정당성과 만민의 공인성, 그리고 제1차도덕적이며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축복 속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29] 총회 실행위원회가 ‘고소장’을 기각할 수 있는지?

-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제14조 기소의 결정 1.에 의거하여 기각할 수 있다. 【89-155】

***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제14조 기소의 결정 1.**

1.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된 때에는 치리회는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0] 소원의 경우도 헌법 권징조례 제62조(재심 청구)에 의거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할 수 있다. 【89-155】

*** 헌법 권징조례 제62조(재심청구)**

제1심 또는 상소심에서 유죄 판결된 사건의 증거 조사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임이 드러났거나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상소 기간 만료에 관계없이 판결한 처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1] 특별재판국이 판결한 사건에 대해 재심할 수 있는지?

- 할 수 있다.

【89-155】

[32]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소원 제68조 (소원의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

- 1)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소원 제68조(소원의 방식)에 의하여 “소원에
는 소원 사유 발생 후 20일 내에 소원장과 그 이유서를 소원 대상
처리회와 상급 처리회에 제출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소원은 대상
처리회와 상급 처리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사유 발생 후’란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인지 한 날부터이다.
- 3) ‘20일 내’란 시찰회에 통보 접수한 날이다. 【91-161】

***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제68조 소원의 방식**

소원에는 소원 사유 발생 후 20일 내에 소원장과 그 이유서를 소원 대상 처리회와 상급 처리회에 제출한다.

[33] 사회법정에 제소하였거나 판결된 내용으로 처리회에 고소장 및 고발장을 냈을 경우에 처리회는 이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반려해야 하는지?

- 해당처리회가 반려할 수 있다.

【94-193】

[34] 피소원인이 개인이 될 수 있는지, 피소원인이 개인일 경우 소원장의 적법성이 있는지, 소속 및 직업 난의 소속 및 직업이 소원장의 피소원인이 속한 그 처리회 또는 결의한 기관의 대표로 보아야 옳은지요?

- 헌법 권징, 제67조 소원의 사유에 의거하여 소원의 대상은 당회나 노회이다. 【93-184】

***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제67조 소원의 사유**

소원은 당회나 노회가 그 소관인 행정 사항의 결정이나 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결정이나 처리가 위법이 된 때에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소속 교인, 처리 회원,

또는 치리회가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

[35] 헌법 제10장 제91조의 처리를 “3분의 2로 결정하는 것인지,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다수로 결정하는 것인지요?

■ 권징조례 제10장 91조, 92조에 따라서 시벌해야 한다. 【93-184】

*** 권징조례 제10장 제91조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된 책벌은 피고의 소속된 치리회가 시벌한다. 시벌하지 않은 치리회는 총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 권징조례 제10장 제92조 시벌의 방법**

1. 은밀히 범한 죄로써 공개되지 않은 죄는 치리회석에서 또는 위원을 파송하여 시벌한다.
2. 공개된 범죄는 치리회가 교회 또는 기타 공석에서 시벌 공포한다.

[36] 헌법 권징 제2장 재판의 특별규정 제101조 ‘직원의 가중처벌’에서 “정직이나 수찬 정지를 당한 직원이 1년 안에 회개치 않으면 재판 없이 면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1) 1년 안에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인가?

■ 해당 치리회이다.

2) 면직처분을 하는 담당 주체가 누구인가? 대개 당회나 노회 재판국은 상설 재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이나 수찬 정지를 판결하고 노회에 보고하고 재판국은 해산하는데 1년 지난 뒤에 누가 면직 처분을 내립니까?

■ 해당 치리회이다.

3) 권징조례 제45조에 의하면 면직판결은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요한다고 하였는데 면직 처분을 위해서 다시 재판국을 만드는 것인지요?

■ 해당 치리회이며 정치 26조 4항, 33조 4항에 의하여 목사나 장로의 면직은 재판에 의하여야 한다. 【93-184】

*** 헌법 정치 제26조 목사의 시무 사임, 사직, 면직**

4. 목사의 면직은 범죄 사실이 있을 때 노회가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하여 처리한다.

*** 헌법 정치 제33조 장로의 사임, 사직, 면직**

4. 장로의 면직은 범죄 사실이 있을 때 당회가 권징조례에 의해 재판하여 처리한다.

[37] 1) 시무 정직자 명부 처리방법에 대해 정직 기간 동안 ①노회의 회원으로 등재해야 하는가?②등재해야 한다면 어떻게 시무 구분을 하는가?

■ 노회의 회원으로 등재해야 하며, 시무구분은 무임(정직)으로 표기한다.

2) 시무 정직자의 책벌 범위에 대해 정직기간 동안 목사의 정직되는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모든 직무가 정직 된다면 목사의 칭호는 유지되는가?

■ 목사의 칭호는 유지되나 헌법정치 제19조에 해당하는 모든 목사의 직무는 할 수 없다.

3) 시무정직 기산일 및 종료일, 종료시 절차에서 ① 시무정직 기산일은 재판 판결일부터인가? 시벌 선포일부터 인가? ② 시무정직 종료 시 자동 복권인가? 해벌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거쳐야 한다면 어떤 절차인가?

■ 시무정직 기산일은 헌법정치 제48조 2항, 정치처리총람 10.권징 [15]~[17]에 의거하여 판결통보 받은 날부터이며, 시무정직 종료는 헌법권징조례 제94, 97조에 의거하여 시벌한 치리회의 해벌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시무정직 종료 후(해벌절차를 거치든지, 자동복권이든지) 목사직만 복권되는 것인지, 시무직까지 복권되는 것인지요?

■ 해벌절차를 거치면 목사직은 복권되나 시무직은 복권되지 않는다.

【94-26,193】

[38] 당회나 노회가 헌법 권징조례 제7장 제67조 소원의 사유에 해당되면 소속 교인, 처리회원, 또는 처리회가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총회가 소원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 총대회원이나 노회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헌법 권징 제67조에 의거하여 소원의 대상은 당회나 노회이므로 총회는 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총회나 총대회원은 차기 총회에 변경청원을 현의할 수 있다.

【94-194】

11. 기 타

- [1] 한국장로교협의회 회원 교단 총회장이 본 교단의 총회시 참석할 수 있는지?
■ 할 수 있다. [57-58]
- [2] 총회시 북한 교회 대표가 참석할 수 있는지?
■ 북한 교회 대표를 총회에 초청할 수 있다. [73-373]
- [3] 교단이 인정할 수 없는 사이비 연합사업(초교파기독교연합회 포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
■ 각 노회가 엄히 규제하고 교육부로 하여금 사이비 종교, 또는 유사 단체를 회보를 통해 수시로 주지시킨다. [62-143]
- [4]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 및 제출 서류는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마감해야 하는가?
■ 총회 사업과 사무를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므로 모든 노회는 그 정기노회에서 총회에 보낼 보통 사건들을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에 사정에 따라 돌발하는 사건은 총회 개회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고 교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건은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51-32]
- * 총회 규칙 제4장 제9조 (총회)
4. 총회 각 위원회 및 노회가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등 모든 서류는 소정 양식에 따라 안건별로 2통씩 총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목사가 불신자의 결혼과 신자와 불신자간의 결혼에 주례할 수 있는가?
■ 불신자간의 결혼에는 범죄성이 없는 신성한 결혼일 경우는 할 수 있고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에는 해당 당회의 결의에 따라 한다. [51-32]
- [6] 자율 단체는?
■ 부흥선교단, 군목단 [71-331]

[7] 총회 사업부서 및 위원회의 총회 후 첫 회의 소집자 명이는 전 위원장으로 하는지, 위원장으로 하는지?

- 첫 회의 소집은 전 위원장이 하되, 공문을 보낼 때에는 “위원장”으로 명기하여 보낸다. 【57-185, 88-167】

[8] 총회장이 임직자에게 임직패를 줄 수 있는가?

- 임직패를 축하패로 명의 변경하고 패 대금은 해 교회가 감당한다. 【71-319】

[9] 총회 실행위원회와 총무간의 보고에서 사업 보고와 헌의권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 사업 보고는 총무가 하고 헌의안건은 총회 실행위원회를 거쳐 헌의한다. 【72-403】

[10] 지교회의 재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교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후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지교회의 재산을 처리할 때 지교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후 반드시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42】

[11] 총회 소집자는 누구인가?

- 헌법 정치 제11장 제63조 2.에 의거한다. 【74-111】

*** 헌법 정치 제11장 제63조 총회의 회집**

- 2. 회장은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한다.

[12] 해외 교회에 파송하는 대표의 선정은 어디서 하는지?

- ㄱ. 교단을 대표하는 회의참석을 위한 대표의 파송은 총회 실행위원회가 한다.
- ㄴ. 해외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송을 위한 추천은 국제협력 선교위원회가 한다. 【77-191】

[13] 총회 헌법위원회가 내린 유권 해석의 효력 발생 시기는 헌법위원회 결의 즉시인지 또는 총회에 보고 채택시인지?

- 해석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82-160】

[14] 총회나 노회에 서류를 접수할 시 1차 접수하였다가 서류 미비로 반려된 건을 서류 구비하여 2차로 접수하였을 경우 1차 접수일을 접수일자로 보는가, 아니면 2차 접수일자로 보아야 하는가?

- 1차 접수일자를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 【82-558】

[15] 헌법 및 교회행정 서식에서의 직인 란과 (인)란에는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 직인란은 반드시 직인을 사용해야 하며, (인)란에는 싸인과 무인을 쓸 수 있다. 【84-108】

[16] 총회 연금 운영세칙 제4조(자격의 취득)에 의하면 「총회 산하 지교회 또는 기관에서 시무하는 정규 교역자는 의무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라는 규정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뜻하는가?

- 교회와 교역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87-334, 733】

[17] 정치치리총람집 자체만을 개정할 수 있는지?(현재까지 개정된 선례가 있는지?)

- 할 수 있다. 【91-160】